

대한민국 부산광역시-이탈리아공화국 제노바시 우호협력도시 협정서

대한민국 부산광역시와 이탈리아공화국 제노바시(이하“양 도시”라 한다)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서(이하“협정서”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 문화적 활력과 시민 이동성을 포함한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 및 경제성장과 더불어 궁극적 목표인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교류에 도시 간 양자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양 도시간 우호협력관계가 협력 및 상호이해,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, 양 도시는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 1 조 (목표 및 목적)

이 협정서는 해외 통상, 투자, 관광, 농업, 과학, 교육, 문화, 스포츠, 예술 분야에서 양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관할법)

이 협정서는 대한민국 및 이탈리아공화국 법과 더불어, 적용 가능한 경우 및 이탈리아공화국의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에 수반하는 의무와 책임과 관련된 경우 국제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3 조 (협력 활동)

양 도시는 이 협정서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중요성을 지니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이행한다.

1. 2022. 12. 16 일 채택된 이탈리아공화국 법 제 204 호 시행령 2022/173 호 제 12 조에 명시된 해양 계획에 따른 항만 분야 및 해양 경제, 해상 통상 전반에 대한 양자교류 증진 및 지원
2. 지속가능한 도심형 이동수단 관련 우수 사례 공유 및 그 밖에 경제통상 관련 행사 개최
3. 상호 투자 지원
4.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우수 사례 공유 및 협력 활성화
5. 환경, 관광, 문화, 스포츠, 예술 분야 등 교류 증진
6. 학술교류 확대 및 과학분야 증진, 인적교류 활성화

제 4 조(재정 의무)

이 협정서는 재정 부담 의무를 수반하지 아니한다. 제노바시의 경우 이 협정서의 이행에 따라 예정되었거나 이행된 활동에 대한 사항은 제노바시의 재정 보고서에 명시하되, 이탈리아공화국에 의존하는 재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.

제 5 조 (통지)

양 도시는 이 협정서에 따른 진행 경과와 계획을 각국 외교공관에 통지한다.

제 6 조 (수정 및 보완)

양 도시는 사전 서면 동의를 바탕으로 이 협정서를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. 제노바시의 경우 이 협정서 승인에 필요한 유사한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.

제 7 조 (협정서의 해석)

이 협정서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에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양 도시는 직접 협의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.

제 8 조 (효력 및 유효기간)

이 협정서는 양 도시의 대표가 서명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, 서명일부터 오(5)년 간 유효하다. 5 년 이후, 양 도시의 국내법에 따른 관련 절차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다. 양 도시는 상대 도시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언제든지 이 협정서의 효력 지속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 9 조 (연락기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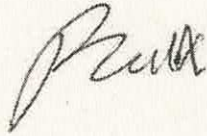
양 도시는 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와 제노바시 외교정책실을 협력사업 증진 및 교류활동 관리를 담당하는 연락기관으로 인지하고 상호 인정한다.

이 협정서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, 한국어, 이탈리아어로 각 2 부씩 작성되었으며, 제노바 시청에서 서명되었다.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을 우선한다.

2024. 5. 20.

부산광역시장

박형준



제노바시장

마르코 부찌

